

건설현장 범칙금 인식도 조사

조병현 · 손기상 · 김수건*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 *태영건설(주)

1. 서 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위반 사항은 고의, 무지, 태만, 실행예산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되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의 각종위반사항에 대해서 규정 데로일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이하, 3년 이하 2천만원이하, 1년 이하 1천만원이하 과태료, 등 단계별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의식,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이들 위반 건에 대해 그때마다 집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지적된 경우에도 어려운 현장 여건이나 근로자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 법례로 집행할 수 없는 인식 등으로 실제 집행된 경우가 별로 없었음을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 수많은 노력이 정부, 건설사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지만 이들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사업주위 주의처벌에서 근로자 또한 엄격히 적용해서 건설현장 당사자 모두가 공감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위반 건에 대한 단계별 벌금, 과태료들에 관련한 규정들을 7단계로 나누어 그룹화 했고 각 규정들에 대해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여부, 인식도, 응답자가 생각하는 중요도 가중치를 구하여 인식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본 론

2.1 관계규정조사

(A)-----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한다. (개정 96.12.31)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4항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B)-----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 처에 처한다.(신설 96.12.31)

1. 제3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3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자
3. 제34조제4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4항,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C)-----

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개정 96.12.31)

1. 제29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43조제1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2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자
2.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증표사용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사용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D)-----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1)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자.
2. 제2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2항, 제49조제2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E)-----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1)

1.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 제29조제1항·제4항, 제21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환경의 측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F)-----

제72조[과태료]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6.12.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개정 96.12.31)

1.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법 및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G)-----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96.12.31)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3조제2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6조제5항 또는 제52조의9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고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0.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12.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한 자

2.2 설문제작

관계규정 중에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사항들만을 기초한 설문을 제작 하였다.

	항목	규정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 동기? 해당에 0표하시오	현장에서의 인식 정도(해당에 0표)					가중치 A-G표시							
			5	4	3	2	1	A	B	C	D	E	F	G	
A	안전상의 조치	(1)안전교육 (2)자신의 정보 수집 (3)공사경험의 과정 (4)사고사례를 통한 정보 (5)기타()	14	9	7		2	17	9	2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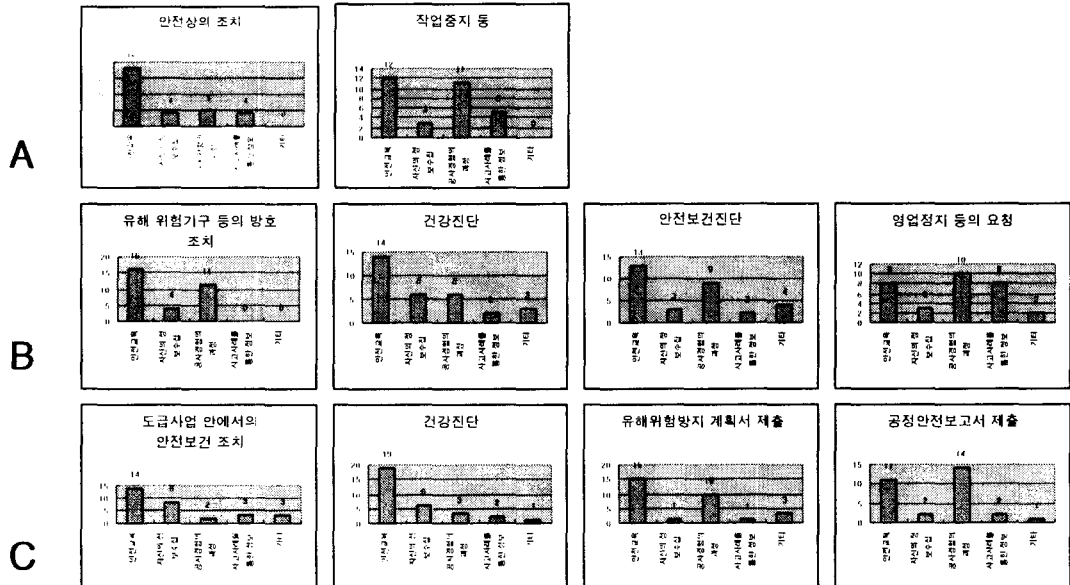
	항목	규정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 동기? 해당에 0표하시오	현장에서의 인식 정도(해당에 0표)					가중치 A~G표시								
			5	4	3	2	1	A	B	C	D	E	F	G		
A	작업중지 등	(1)안전교육 (2)자신의 정보 수집 (3)공사경험의 과정 (4)사고사례를 통한 정보 (5)기타()	12	10	8	2		14	13	4						
B	유해 위험기구 등의 방호조치		11	10	8	2	1	10	15	3	3					
	안전진단		9	6	10	4	3	7	5	10	4	1			4	
	안전 보건 진단		5	6	9	7	5	3	5	9	3	2	5	4		
	영업정지 등의 요청		2	9	7	9	5	4	10	6	5	3	2	1		
C	도급사업 안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5	9	13	2	2	6	11	7	4	1	1			
	건강진단		9	7	12	3	1	9	6	12	3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9	6	7	8	2	6	7	7	8		1	2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		1	5	13	7	7		4	9	7	4	3	4		
D	보고의 의무		5	10	11	5	1	2	9	10	5	1	2	2		
	도급사업의 안전			9	15	6	2	1	7	9	7	5	2			
	화학물질 유해성 조사		1	9	5	13	4	1	7	9	7	5	2			
	작업환경 측정		1	8	6	12	5	2	6	5	10	4	3	1		
	건강진단		9	6	8	7	1	8	6	9	8					
	질병자의 근로 금지		5	14	11	2		7	8	10	3	1	1	1		
E	안전보건 개선계획			10	12	3	7	2	10	9	5	3	2			
	안전표시 부착		10	15	4	1	2	10	13	4	3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8	11	8	3	2	6	12	8	3	2				
	안전관리자		15	11	4		2	12	10	5	1	2				
	보건관리자		2	7	6	8	9	2	7	7	5	6	2	2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1	10	13	7	1	2	9	8	7	2	3			
	안전보건 교육		11	10	8	1	2	11	12	4	4					
	자체 검사		22	7	2	1		25	4	2						
	유해물질 표시		1	9	13	8	1	2	6	11	10	2				
	건강관리 수호		2	7	15	5	3	4	7	9	7	3	2	1		
	안전보건 진단		3	5	8	11	5	4	5	8	5	4	4			
	안전보건 개선계획		3	6	10	6	7	1	9	5	10	4	1	1		
	감독기관 신고		4	9	11	4	4	4	6	8	9		1	2		
작업환경 측정		2	5	12	6	7	2	7	7	7	3	3	1			

*가중치:A,B,C,D,E,F,G중에서 가장무거운 벌금으로 인식시 A, 가장 가벼운 벌금시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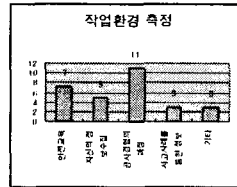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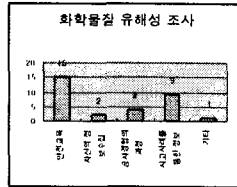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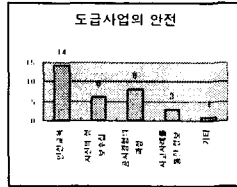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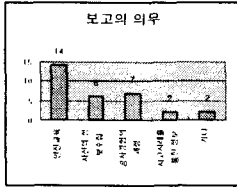
	항목	규정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 동기? 해당에 0표하시오	현장에서의 인식 정도(해당에 0표)					가중치 A~G표시										
			5	4	3	2	1	A	B	C	D	E	F	G				
F	법령요지 게시	①안전교육 ②자신의 정보 수집 ③공사경험의 과정 ④사고사례를 통한 정보 ⑤기타()	4	5	7	10	6											
	관리 감독자		2	13	14	2	1	4	11	10	5		1					
	물질안전보건 자율 작성비리			5	10	10	7	1	7	6	9	4	1	3				
	작업환경 측정		1	7	9	9	6	3	7	5	9	3	3	1				
G	법령요지 게시 등		1	8	9	10	4	3	5	6	9	5	3					
	근로자 준수 사항		10	16	2	3	1	12	12	5	1		1					
	표준 안전관리비 계산		13	6	7	5	1	13	7	4	1							
	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3	19	6	3	1	3	13	8	6	1						
	자체 검사		5	7	14	6		5	5	16	4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2	5	9	10	4	2	9	10	3	3	1	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리			8	6	12	6		10	7	5	5	2	2				
	작업환경 측정		2	6	12	10	2	2	8	11	6	2	1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제출		9	9	4	7	3	6	8	7	6	1	2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1	5	10	12	4	2	4	10	6	4	2	3				
	감독상의 조치		1	12	10	4	5	4	15	6	2	1		3				
	서류의 보존		4	13	5	7	3	2	12	6	8							

3.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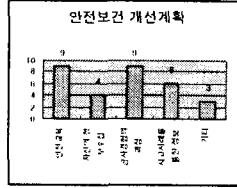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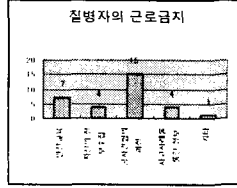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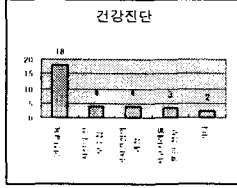
H사(6명),D사(12명),L사(7명),S사(6명),SA사(1명), 총32명의 각기업 간부급 들로만 설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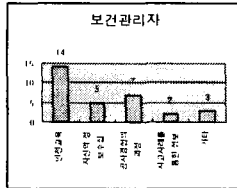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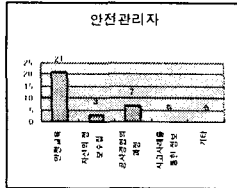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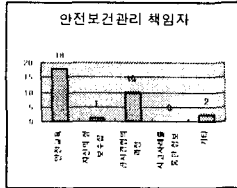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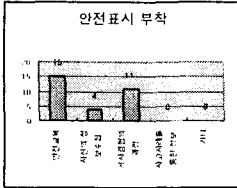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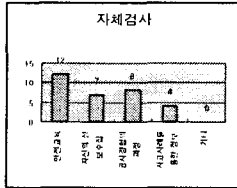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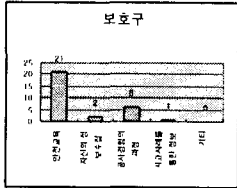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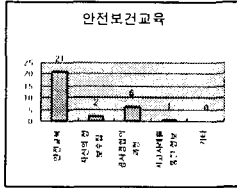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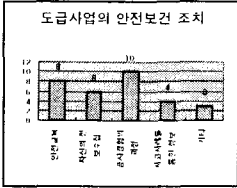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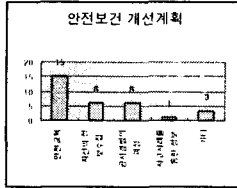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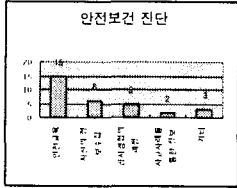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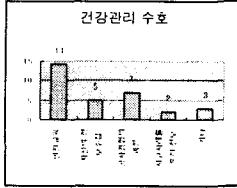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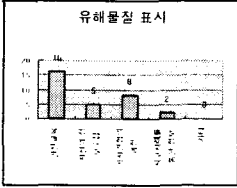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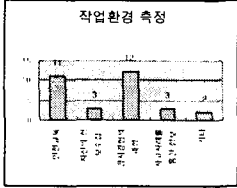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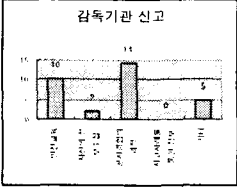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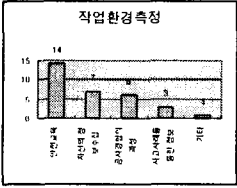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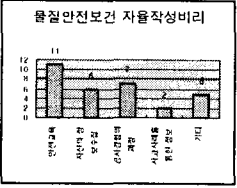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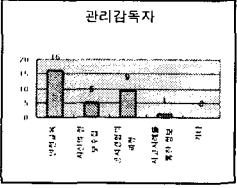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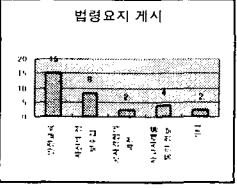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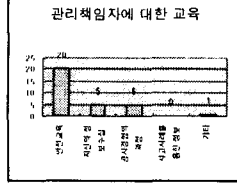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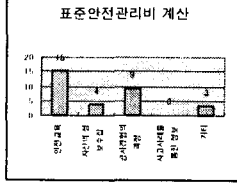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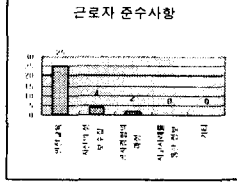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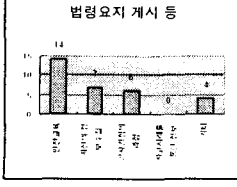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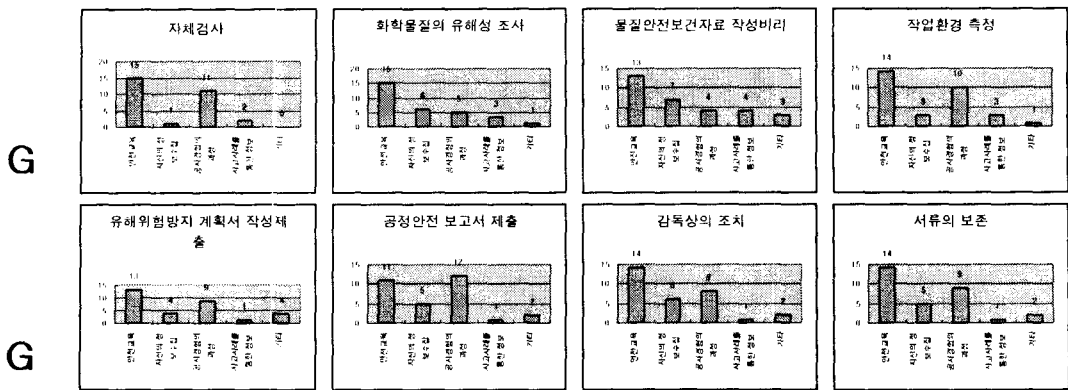


F



G





4. 분석

- (1)“규정에 대한 경험을 하게된 동기?”에서는 ①안전교육이 674/1504=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③공사경험의 과정 370/1504=24%, ②자신의 정보수집 211/1504=14%, ⑤기타가 142/1504=9%, ④사고사례를 통한 정보가 107/1504=7%을 차지했다.
- (2)안전교육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현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법규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현장의 인식정도”는 3 이 가장 많은 419/1504=27%로 나타났고, 그 뒤로 거의 비슷한 2 가 413/1504=27%로, 5 가 241/1504=16%로 뒤를 이었다.
- (4)“현장의 인식정도”는 각 항목별 중간정도로 안전법규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가중치”는 B가 393/1504=26%, C가 353/1504=23%, A가 274/1504=18%로 나타났다.
- (6)B와C가 총 49%로 과반수를 차지 한 것으로 보아 각 항목별 벌칙금의 인식도 정도가 무거운 벌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 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안전에 대한 법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산업재해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
- (2)대부분이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법규”를 알고 있고, “사고사례를 통한 정보”와 “공사경험의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보아 현 법규와 그에 따른 실행 형벌과 벌칙금이 다르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 (3)“가중치”를 통해 볼 때 현장의 법규위반은 안전교육을 통해 무거운 벌금으로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현장인식 정도”는 보통수준으로 인식되어 실행의 미비함을 알수있다.
- (4)상기 사항으로 볼 때 형식적인 법규만 만들어 놓았을 뿐, 현실적으로 실제 법원의 양형이 소액벌금형에 그쳐 안전의식 고취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직접관련이 적은 규정은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법규의 재조정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법적 조항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1)“산업안전 보건법”, 2003, 노동부 67조~72조
- (2)“2003년도 건설재해예방 정책방향”, 2003, (주)안전세계 pp256~258